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40호 2003. 11. 28)

총 무 위 원 회

2003. 12. 20(토)

1. 심사경과

가. 2003. 11. 28 : 사천시장 제출

나. 2003. 11. 28 :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3. 12. 18 :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개정이유

사천공군부대 확장 공사에 편입된 축동면 동치마을 주민이 용현면 신복리 일원에 집단으로 주택단지를 조성, 2002년부터 이주를 시작 현재 40세대가 구성됨으로써 이장의 업무 증가와 각종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리의 신설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함.

나. 주요골자

이장정수 중 용현면 신복리 정원 2명을 3명으로 함(안 아래표)

현행				변경			
읍면동	이동명	정원	관할구역	읍면동	이동명	정원	관할구역
용현면	신복리	2	신복, 평기 일원	용현면	신복리	3	신복, 평기, 신영 일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명돈)

○ 개정조례안은 공군부대 기지확장공사로 축동면 원계와 동치마을이 편입됨으로 원계와 동치마을 거주 주민이 용현면 신복리 일원에 집단으로 주택단지를 조성, 2002년부터 이주를 시작 현재 40세대가 구성됨으로써 각종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리의 신설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으로 2003년 8월 4일 용현면 신복리 502-20번지 김남보 외 73명이 리 신설 건의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첩한 바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